

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

제안년월일 : 2004년 5월 19일

제안자 : 정윤숙 의원의외

□ 제안이유

- 신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근거를 명확하게 하고, 법인의 각종 사업명을 정비하기 위함.

□ 주요내용

- 재단의 설립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제명을 “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”을“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”으로 함.
- 재단의 설립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“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(이하 “테크노파크” 라한다)를 효율적으로 운영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”를 “제17조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북테크노파크(이하 “테크노파크” 라한다)의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”로 함.
-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“충북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”를 삽입 함.
- 재단의 사업명 일부를 정비 함.

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조례제명을 “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”을 “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”으로 한다.

안 제1조 목적 중 “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(이하 “테크노파크” 라한다)를 효율적으로 운영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”를 “제17조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북테크노파크(이하 “테크노파크” 라한다)의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”로 한다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2조(설립및운영)충북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.

안 “제2조 내지 제9조”를 “제3조 내지 제10조”로 한다

안 제3조 제1호, 제2호, 제3호, 제4호, 제5호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산·학·연·관 등 공동연구개발사업
2.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사업
3. 산업기술 정보 유통 및 마케팅 지원사업
4. 신기술 보육 및 창업지원사업
5.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사업
6. 시험생산사업

조 문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 관한조례안</p>	<p>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 지원에관한조례안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(이하 “테크노파크”라 한다)를 효율적으로 운영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제17조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북테크노파크(이하 “테크노파크”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	<p>제2조(설립및운영) 충북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사업)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동연구개발 2.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3. 산업기술 정보 유통 및 마케팅 지원 4. 신기술 보육 및 창업지원 5.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6. 시험생산 7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8. 그 밖의 테크노파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	<p>제3조(사업)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산·학·연·관 등 공동연구개발사업 2.사업 3.사업 4.사업 5.사업 6.사업 7. 8.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재산조성) 1~4(생략)	제4조(재산조성) 1~4(생략)
제4조(재정지원) ①~②(생략)	제5조(재정지원) ①~②(생략)
제5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 (생략)	제6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 (생략)
제6조(업무의 위탁)(생략)	제7조(업무의 위탁)(생략)
제7조(보고 및 검사 등)(생략)	제8조(보고 및 검사 등)(생략)
제8조(공무원의 파견 및 겸직)(생략)	제9조(공무원의 파견 및 겸직)(생략)
제9조(재단법인의 운영)(생략)	제10조(재단법인의 운영)(생략)
부칙(생략)	부칙(생략)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

제17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·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

제22조(기술지도 등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다

□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

제5조(기술기반조성사업)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(이하 “기술기반조성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
2. 산업정보의 모집·분석·유통의 촉진
3. 기술연구시설 등의 확충
4. 기술연구의 집단화의 지원
5. 신기술보육사업
6. 국제기술협력의 촉진
7. 기술력의 제고를 위한 경영 또는 기술의 진단·지도
8. 기술의 표준화
9. 개발기술의 이전·알선 및 개발성과의 확산
10. 기타 기술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
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·법인 및 단체 등(이하 “주관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1. 국·공립연구기관
2.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
3. 산업기술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
4.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기술대학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
5.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
6.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·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
7.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·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
8. 기타 기술력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

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출연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97·1·13, 99·1·29 법5725>

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등 지원금의 교부·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

□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

제4조(설립허가기준)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 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,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·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(이하“각기본재산”이라한다)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 허가를 한다.

□ 민 법

제32조(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14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·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
4.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